

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0호(2010.06.03.)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9호(2017.02.02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3호(2017.12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89호(2023.05.18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·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8-76호(2018.09.2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2호(2022.01.0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3-95호(2023.08.24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4-142호(2024.12.05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월 16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-61번지 일대(55,832.9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명: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최일성)
 - 나. 주소: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2, 의당빌딩 3층(대방동)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(2018. 9. 19.)로부터 120개월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(최초) 2018. 9. 19.
6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: (1회) 2023. 8. 14 / (2회) 2024. 11. 28./ (금회)2025. 1. 10.
7. 변경내용(경미한 변경)
 - 가. 단위세대 114 내부구조 개선
 - 나. 입면디자인 등 경관변경(건축심의결과 범위 내)

8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(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-142호(2024.12.05.) 별첨 누락에 따라 금회 고시함.)
9. 기타 관계도서: 생략 (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)